

2020 게이트볼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검정 유의사항

2020년 10월 27일(화)~30일(금), 대전 전천후게이트볼장

1. 유의사항

- 시험 접수 시, 휴대폰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실기 및 구술이 모두 끝난 후에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휴대폰 미제출이 확인될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실격처리됨.)
- 시간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접수 시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시자, 접수완료 한 시험 대기자 외 대기실은 따로 없습니다.
- 응시자 외 외부인 출입을 금지합니다. (단 운영요원, 시험위원 제외)
- 전염병 예방을 위해 공용 음용수는 비치돼있지 않습니다. 개인 음용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장소 인근(도보로 이동 시)에 식당이 없으므로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게이트볼 자격시험 최초시작일(10월 27일) 전 10월 26일까지 검정 취소 시 전액환불, 10월 27일 이후 검정 취소 시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 시험차례까지 접수하지 않을 시, 실격처리가 됩니다. 시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관련 추가 유의사항

- 시험장 입구에서 진행되는 발열 검사에서 37.5°C 이상인 응시자는 입장 및 응시 불가합니다.(발열 증상자는 3~4회 추가 측정)
 - 1차 또는 2차에서 37.5°C 이상 일 경우 10분 간격으로 최대 2회 재측정
 - 재측정 결과 37.5°C 이상 일 경우 임시격리소 격리 조치 및 검정 응시 불가
 - 검정 중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퇴장 조치합니다.(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 통보 및 이송 등 연계 조치 가능)
- 최근 14일 이내 확진 환자와 접촉한 자 및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는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최근 14일 이내 해외(미국, 이탈리아, 중국 등)를 다녀온 자는 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 모든 응시자는 게이트볼장 내 모든시설 및 검정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합니다.(미착용 시 시험응시 불가)
- 코로나 문진표(사전 작성 후 당일 제출 가능)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응시할 경우, 해당 응시자는 응시가 취소될 수 있고, 사항이 따라 필요 시 법적 조치(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시험장 접수 입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작성하여 오심을 권장합니다.
- 수시로 손 씻기와 손소독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정장소 각 구역마다 손소독제 비치)

3. 수험생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외 신분증 인정되지 않음.)
- 게이트볼 스틱, 운동복, 운동화

4. 부정행위기준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시험문제 및 답안을 알려주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4.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변하는 행위
6.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등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
8.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사용하는 행위
9.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0. 교사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2.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 관련 법 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 ③ 자격검정을 받는 사람이 그 검정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현장에서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4.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